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망우초등학교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라 한다)와 서울망우초등학교(이하 “서울망우초교” 라 한다)는 양 기관의 인재양성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교대와 서울망우초교 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인재양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호혜와 상호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협약 내용) 양 기관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며, 구체적인 실행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2. 서울교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
3. 서울망우초교 학생의 진로지도 지원
4.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 실시
5. 기타 양 기관의 필요에 따라 협의한 교육 협력 사업 추진

제4조(협약 이행)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제5조(협의 및 조정) 본 협약의 해석 및 이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한다.

제6조(비밀유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7조(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만료일 전에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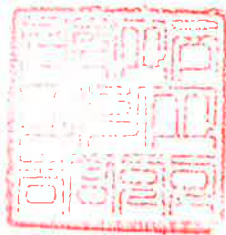
제8조(기타사항)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12. 2.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교육대학교
총 장 장 신 호



서울망우초등학교
SEOUL MANGWOO ELEMENTARY SCHOOL

서울망우초등학교
교 장 신 창 식

